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5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75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2027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예정금액 : 1,340,648천원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계	인건비	사무운영	사업비	안견문화제
2027년	**1,340,648**	575,412	325,236	290,000	150,000

○ 출연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3.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서산문화재단

○ 설립년월 : 2020. 11. 09. 개원

○ 설립근거 :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위　　치 :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61, 서산시 공공서비스 센터 3층

○ 임원현황 : 15명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11, 감사 2)

○ 직원현황 : 12명 (공무원 파견 1명 포함)

○ 사업내용

- 서산해미읍성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2개소 운영,
  문화사업 추진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재정법」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Ⅲ. 검토의견

1. 제안목적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산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항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분야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출연에 의한 재단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20조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윤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서 시장은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시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시민 수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기획 및 현장 운영 경험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 따라서 서산문화재단의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출연금 규모

○ 출연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 출연금액 : 1,340,648천원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출연금	751,222	734,530	788,333	969,079	**1,340,648**

*** 2027년도 예산은 본예산 심의전으로 변동될 수 있음 ***

○ 출연내용

구 분	'27년예산	산 출 내 역
계	1,340,648	
인 건 비	575,412	• 인건비(총 74명 /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사무운영비	325,236	•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등)
사 업 비	290,000	• 11개 사업 추진
안견문화재	150,000	• 안견미술대전, 전국청소년미술공모전, 안견추모제(향), 안견현창사업

3. 검토의견

가. 본 출연 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산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서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사업내용 역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서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시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라.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시민 수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기획 및 현

장 운영 경험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마. 따라서 서산문화재단의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다만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